

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,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(민간위탁)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가. 추진근거

-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
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나. 필요성

- 2023년 “농촌협약” 공모를 위한 전제조건
- 전담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여 전문성 확보

○ 위탁사무 내용

가.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컨설팅
- 농촌주민, 현장활동가 등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교육프로그램

나.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-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/W사업 지원
-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, 포럼,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다.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공급·전달 지원사업

-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기획, 이행지원
- 현장활동가가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, 전달과정에 참여 프로그램 기획

○ 위탁기간 : 2022 ~ 2023(2년간), 재연장 가능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○ 소요예산 : 시군역량강화 예산 250백만원(2022년 기준)

4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」은

-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변경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별공모가 아닌 농촌협약(패키지)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촌협약의 전제 조건인 중간지원조직(농촌협약지원센터)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,
-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,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사무와 운영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